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p>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p>
<p>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접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 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수사자료 내용 누설 금지 ③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13조, 제27조제3항, 제33조) 등 ④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등 <p>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밀 또는 비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감사규정 제28조에 따른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의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등
<p>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상황보고서, 민방위교육 및 예비군 관련 각종문건 ②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③ 대학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해킹·사이버테러 등 공개될 경우 대학업무나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④ 기타 관계기관으로부터 국가안보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p>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학내 위험물 저장위치 및 화학물질 보유위치 등에 관한 정보 ② 대학 건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등
<p>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법률검토자료, 내사자료,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소속기관 및 직원의 감독·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
- ②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문제 출제관리, 시험문제 출제위원 위촉, 시험관리요원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등
- ③ 임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 교육 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
- ④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상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 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⑤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예정가격 또는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⑥ 자금 예탁 금융기관 선정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⑦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대학 내부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⑧ 제안제도운영규정에 의한 직원의 제안의 내용.다만,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노조관련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사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⑩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①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경력, 직업, 활동사항, 사상, 종교,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에 관한 민감정보
- ② 진정서, 탄원서,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서, 시험원서, 포상내역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
- ③ 성희롱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 수사관계조회(범죄경력조회) 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등
-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름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① 대학의 각종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작성·생산한 정보 등으로써 영업상의 비밀 또는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각종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 및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또는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 ③ 대학의 각종 사업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

학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한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여 투기, 매점매석 등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